

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사항

2025.1.1.~2025.12.31. 기간 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현재 채용자가 없어도
미리 기업신청 후 채용 시 채용자 명단만 올리면 더욱 용이하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

<기업신청시 제출서류>

1. 사업자등록증
2. (법인·개인사업자)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(면세사업자)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※기업신청 :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.

1) 지원내용

(유형 I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
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년간 최대 **720만원 지원** (월 최대60만원 X 12개월)

(유형 II) **빈일자리 업종(제조업등)**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
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**720만원 지원**,
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**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 지원**

2) 기업지원금 신청 (유형 I),(유형 II)

1회차 지원금 신청 : 청년 채용 후 **6개월(최소고용유지기간) 경과 후 신청**

2회차 지원금 신청 : 7~9개월 고용유지

3회차 지원금 신청 : 10~12개월 고용유지

※**채용일로부터 1년(12개월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~3회차
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**

신청 기한 예시

채용	6개월 고용유지	1회차 신청마감	채용 후 9개월	2회차 신청마감	채용 후 12개월	3회차 신청마감
'25.2.23.	'25.8.22.	'25.10.31.	'25.11.22.	'26.1.31.	'26.2.22.	'26.4.30.

3) 청년지원금 신청 (유형 II)

1회차 지원금 신청 : 채용일로부터 **18개월 경과 후 신청 (240만원)**

2회차 지원금 신청 :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경과 후 신청 (240만원)

※**채용일로부터 2년(24개월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~2회차
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**

신청 기한 예시

채용	18개월 고용유지	1회차 신청마감	채용 후 24개월	2회차 신청마감
'25.2.23	'26.8.22	'26.10.31.	'27.2.22	'27.4.30

4) 고용조정제한

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1년의 기간동안
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. (위반 시 지원금 중단)

- 고용조정 제한 대상 :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. (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)
 - * 기간제 근로자(계약직)로 채용된 경우,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
-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,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·전환 후 1년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.

※ 기업 및 청년 자격요건은 유선상 확인이 어렵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주시면 적격/부적격 심사후 별도 연락드립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최종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·오류가 확인되거나, 기업요건, 청년요건, 채용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문의 : 서산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강하나 대리(041-663-3063)